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단지내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2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46624호(2019.10.31)로 입주자 모집 신고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682번지외 79필지 (대지면적 : 54,141.0000㎡)

▣ 공급규모 : 단지내 상가 2개동 지상1층, 총 38점포 (분양면적 : 2,170.5709㎡)

▣ 공급면적 및 내정가격

(단위:㎡, 원)

동	층	호수	면적				내정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합계
501동	1층	101	41.8200	11.8398	53.6598	18.9293	335,200,000	159,800,000	16,000,000	511,000,000
		102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6,000,000	155,500,000	15,500,000	497,000,000
		103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6,000,000	155,500,000	15,500,000	497,000,000
		104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6,000,000	155,500,000	15,500,000	497,000,000
		105	65.1800	18.4534	83.6334	29.5029	566,000,000	270,000,000	27,000,000	863,000,000
		106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54,200,000	168,900,000	16,900,000	540,000,000
		107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54,200,000	168,900,000	16,900,000	540,000,000
		108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54,200,000	168,900,000	16,900,000	540,000,000
		109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54,200,000	168,900,000	16,900,000	540,000,000
		110	93.7740	26.5487	120.3227	42.4456	775,300,000	369,700,000	37,000,000	1,182,000,000
		111	40.7900	11.5482	52.3382	18.4631	354,200,000	168,900,000	16,900,000	540,000,000
		112	68.3400	19.3480	87.6880	30.9332	588,300,000	280,600,000	28,100,000	897,000,000
		113	47.4300	13.4281	60.8581	21.4686	404,700,000	193,000,000	19,300,000	617,000,000
		114	47.4300	13.4281	60.8581	21.4686	404,700,000	193,000,000	19,300,000	617,000,000
		115	39.7800	11.2623	51.0423	18.0059	324,700,000	154,800,000	15,500,000	495,000,000
		116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7,300,000	156,100,000	15,600,000	499,000,000
		117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1,400,000	153,300,000	15,300,000	490,000,000
		118	40.8000	11.5511	52.3511	18.4676	321,400,000	153,300,000	15,300,000	490,000,000
		119	41.8200	11.8398	53.6598	18.9293	327,300,000	156,100,000	15,600,000	499,000,000
502동	1층	101	41.8200	7.9939	49.8139	18.9293	320,100,000	152,600,000	15,300,000	488,000,000
		102	40.8000	7.7989	48.5989	18.4676	312,200,000	148,900,000	14,900,000	476,000,000
		103	71.4000	13.6481	85.0481	32.3183	524,100,000	249,900,000	25,000,000	799,000,000
		104	40.8000	7.7989	48.5989	18.4676	299,700,000	143,000,000	14,300,000	457,000,000
		105	40.8000	7.7989	48.5989	18.4676	299,700,000	143,000,000	14,300,000	457,000,000
		106	35.7000	6.8241	42.5241	16.1592	257,100,000	122,600,000	12,300,000	392,000,000
		107	35.7000	6.8241	42.5241	16.1592	251,900,000	120,100,000	12,000,000	384,000,000
		108	51.0000	9.7487	60.7487	23.0845	344,300,000	164,300,000	16,400,000	525,000,000
		109	51.0000	9.7487	60.7487	23.0845	337,100,000	160,800,000	16,100,000	514,000,000
		110	51.0000	9.7487	60.7487	23.0845	322,000,000	153,600,000	15,400,000	491,000,000
		111	51.0000	9.7487	60.7487	23.0845	322,000,000	153,600,000	15,400,000	491,000,000
		112	35.7000	6.8241	42.5241	16.1592	225,000,000	107,300,000	10,700,000	343,000,000
		113	35.7000	6.8241	42.5241	16.1592	225,000,000	107,300,000	10,700,000	343,000,000
		114	40.8000	7.7989	48.5989	18.4676	260,400,000	124,200,000	12,400,000	397,000,000
		115	40.8000	7.7989	48.5989	18.4676	260,400,000	124,200,000	12,400,000	397,000,000
		116	40.8000	7.7989	48.5989	18.4676	260,400,000	124,200,000	12,400,000	397,000,000
		117	40.8000	7.7989	48.5989	18.4676	282,700,000	134,800,000	13,500,000	431,000,000
		118	40.8000	7.7989	48.5989	18.4676	287,900,000	137,400,000	13,700,000	439,000,000
		119	72.4200	13.8431	86.2631	32.7800	510,900,000	243,700,000	24,400,000	779,000,000

※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사업계획변경, 확정측량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규에 의해 산출되며, 점포내에 위치한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 분양면적에는 복도, 화장실, 지상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공급방법 : 점포별 공개경쟁입찰 (내정가 공개)

▣ 공급조건

1) 1인당 입찰 점포수는 3건으로 제한하며, 동일 점포에 중복신청은 할 수 없음.
2) 낙찰자 선정은 동·호별 당사 내정가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추첨방식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3) 응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당사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4) 입찰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십만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5)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함.
6) 입찰금액이 내정가격 미만일 경우 유찰로 하며, 미신청 및 유찰된 점포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처리함.
7) 낙찰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반드시 계약은 낙찰자의 명의로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외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음)
8)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및 변경할 수 없음.

▣ 시설별 사용 용도 :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일시	구비서류	장소
입찰 등록	2019.11.05(화) (10:00 ~ 14:00)	• 입찰참가신청서(회사 소정양식, 등록시 교부) • 입찰보증금 : 호별 1,000만원(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지참) • 입찰자 신분증, 도장 • 입찰자 환불 통장사본(유찰자 환불용, 입찰자 명의 통장만 가능) ※대리인 신청시(추가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79번지) 문의 : 1855-1392
입찰 및 개찰	2019.11.05(화) (15:00)	• 입찰서(회사 양식으로 입찰등록시 교부) • 입찰자 도장	
계약 체결	2019.11.06(수) (10:00 ~ 16:00)	• 입찰참가신청필증 및 낙찰확인증, 입찰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무통장입금증-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법인 및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리인 계약시(추가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입찰 보증금 환불	2019.11.29(금)	• 2019년 11월 29일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환불예정 ※유찰된 입찰보증금 환불시 신청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상기 제반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대리인 입찰 신청 및 계약시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위임인의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40-011-358145	월성7지구지역주택조합 박운흡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 약 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납부일자	계 약 시	2020.09.15	2021.06.15	입주지정기간내
납부대금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70%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63412-0 예금주: 아시아신탁(주)(배일규)] ※ 분양대금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함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의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예정일 : 2022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일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입주 연기로 인한 지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유의사항

- 입찰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영업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당사에 통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점포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각 점포는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및 입주 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등의 기타 인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입찰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낙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낙찰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함.
-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준공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되는 시설은 낙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입점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계약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이전에는 점포내부 및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점포 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대지지분은 지적확정측량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 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당사는 계약자에게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 또는 기타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는 동의 요청에 관한 의무가 없으므로 준공 건물과 설계도면의 경미한 차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또는 완납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함.
- 유찰 및 입찰무효된 미분양 점포는 사업주체가 필요에 따라 임의 분양하며, 점포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도 임의로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
- 홍보용 인쇄물 및 게시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이미지컷들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상가의 간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련 법률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등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동측 월곡로가 인접하여 차량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4m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에 월곡로와 인접한 502동 일부 점포는 조망, 환기 등의 환경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신 후 공개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내 설치 불가 업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입찰자, 입점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입점자에게 있음.
- 음식점 입점시 주방배기용 닥트설비는 사용자(임차인 포함)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음식점 입점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함.
- 동·호수별 출입문의 위치 및 창호 규격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옥상 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 조경녹지가 설치 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에 접한 차도 및 보도, 공원은 기부채납 또는 관할 관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구광역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 공원, 완충녹지 등)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은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월배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가 설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 설립 여부는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교 추가설립 소요 발생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종결정 됩니다.
- 입찰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는 분양공고, 점포용도, 현장여건 등 기타 입찰분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상가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19-101-0002000 호	₩ 6,105,300,000원 (육십일억오백삼십만원정)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주)삼정기업	(주)삼정기업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79, 6층 604호 (월성동, 씨엘타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
법인등록번호	225-82-65568	144411-0000150	144411-0000150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7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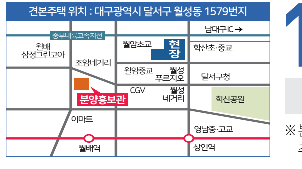

1855·1392

http://greencore-forest.co.kr

시공 SE 삼정기업

시행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